

#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

## 가. 근거

◆ 도시가스사업법 개정(2003. 5. 27 법률 제6886호)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.

-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(보험가입)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- 생략

2. - 생략

3.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

※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
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-----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.

※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함.(별표11)

※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(별표 17의2)

## 나. 보험약관

◆ 기본보상한도 : 대인배상 사망 1인당 6천만원

대물배상 1사고당 3억원

부상1인당 1천5백만원

- 보험기간 : 1년

- 보험기간 연장 : 휴업,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만료일로부터 12개월 연장

(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제외 됨)

- 특별약관 : ○가스시설시공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가능.

○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

제

## 가스보일러설치·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

No.

사 용 자	① 성명	② 전화번호
	③ 주소	
	④ 건축물 소재지	
시 공 자	⑤ 명칭 또는 상호	⑥ 시공자등록번호
	⑦ 대표자	⑧ 주민등록번호
	⑨ 사무소 소재지	TEL
⑩ 분류 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⑪ 규모 건축면적( ), 난방면적( ), ( ) 평형( 세대), (층수) 층		
⑫ 제조자명		⑬ 제조번호
⑭ 모델명		⑮ 금·배기방식 <input type="checkbox"/> FF, <input type="checkbox"/> FE, <input type="checkbox"/> CF
⑯ 사용ガ스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LNG <input type="checkbox"/> LPG		⑰ 난방 출력 kcal/h
⑲ 배기통재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T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⑳ 배기통 높이: m, 직경: mm
㉑ 보일러설치장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용보일러실 <input type="checkbox"/> 배란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㉒ 시공년월일 년 월 일		
㉓ 급기구, 상부 환기구의 적합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㉔ 공동배기구, 배기통의 박합 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㉕ 가스누출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㉖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정상
㉗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㉘ 사용교육의 실시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실시
㉙ 기타 특기사항		

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제4-2-2조 제10호(제6-1-2조 제9호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
같이 확인하고 이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시공자: (인)

상기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
만약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발생 시에는  
사망(후유장해포함)의 경우 1인당 6천만원, 부상의 경우 1인당 1천 5백만원,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  
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과 약관상 면책  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보험가입기간 : 2005년 11월 13일~2006년 11월 13일

※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기간은 특별약관 제4조에 의거 보험증권만료일부터 1년간 연장 담보함.

단체보험가입기관 : 전국보일러설비협회장



##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

- 보험계약자 : 전국보일러설비협회
- 보상내용 :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에 의거 가스보일러 및  
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 
가스사고 피해보상
- 보상한도
  - 대인(1인당) : 사망후유장해/6천만원, 부상/1천5백만원
  - 대물(1사고당) : 3억원

© 쟁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
대표이사 사장 양인진



## 하자담보/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

- 보험계약자 : 전국보일러설비협회
- 보상내용 : 시공자의 보언리 완성작업 결함으로 발생된  
긴장설인 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 의한  
시공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
- 보상한도
  - 대인대물일률(1사고당) : 3억원

© 쟁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
대표이사 사장 양인진



※ 본 확인서가 복사본인 경우 어떠한 사고일지라도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복사하여 사용한 자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게 됩니다.  
(문의처 : 전국보일러 설비협회 02-3401-1497)

※ 상세한 보험계약사항과 보상내용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릅니다.